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465호 2020년 8월 31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황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2호) ····· 7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양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3호) ····· 9

○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4호) ····· 11

○ 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5호) ····· 12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6호) ····· 27

■ 공 고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25호) ····· 29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0호) ····· 134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1호) ····· 136

○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6호) ····· 137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8호) ····· 138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9호) ····· 140

○ 2020년 경상북도 재정공시(결산)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44호) ····· 141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 및 진입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0-237호) ····· 144

○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0-238호) ····· 151

○ 김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변경) 및 고시(변경)
(김천시 고시 제2020-99호) ····· 154

○ 김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변경) 및 고시(변경)
(김천시 고시 제2020-102호) ····· 163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201호) ····· 199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0-228호) ····· 202

○ 영주시 장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0-115호) ····· 208

○ 하천점용허가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0-231호) ····· 210

■ 공 고

○ 신조 공인 공고
(김천시 공고 제2020-1776호) ····· 212

○ 영주 도시계획시설사업(가흥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0-873호) ····· 214

○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에이파크 1단지)
(경산시 공고 제2020-1203호) ····· 217

○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에이파크 2단지)
(경산시 공고 제2020-1204호) ····· 221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울진군 공고 제2020-1412호) ····· 224

○ 울진 군계획시설(수산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울진군 공고 제2020-1416호) ····· 226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13호) ····· 233

■ 공 고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김천소방서 공고 제2020-1호) ····· 235

◈◈◈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2호

황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황학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노후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약목면 동안리 일원

○ 수혜면적 : 152.9ha(달서지 51.1ha, 신덕산배수장 101.8ha)

○ 사업개요

【달서지】

· 물넘이 재설치(L=32m), 방수로 바닥보수(L=163m), 감세공 측벽증고(H=1.0m)

【신덕산배수장】

· 비상전원시설 설치 1식

3. 사업비소요액 : 1,248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0. ~ 2023.

5. 사 업 효 과 :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시설물안정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054-800-505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3호

양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상북도지사

1. 사 업 목 적 : 노후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상주시 화동면 양지리 일원

○ 수혜면적 : 91ha

○ 사업개요

【양지지】

- 제 방 : 더돋기(H=0.40m), 내제사석쌓기(L=177m, H=1.0m)

- 여 방 : 방수로 측벽증고(L=159m, H=1.7m~4.5m)
- 복 통 : 강관삽입(D=1.2m, L=104m)
- 사 통 : 스핀들, 문비, 스크린 교체
- 부대공 : 1식

3. 사업비소요액 : 1,889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0. ~ 2023.

5. 사 업 효 과 :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시설물안정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29)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4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선터널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2-15	남부건설사업소	철거	관리주체 관리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5호

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일반현황

가. 산업단지개요

○ 명 칭 : 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12번지 일원

○ 면 적 : 1,739,210㎡

○ 사업시행자 : (주)동경주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종율 외 26개사

○ 관리기관 : 경주시장〔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나. 조성목적

○ 울산북부지역의 발전과 경주 남부권인 외동지역의 공업용지 부족, 국도31호선 4차선 확장으로 인한 양남지역의 교통여건의 개선 및 한수원 유치와 방폐장 조성으로 인한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부응

○ 지역내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도모

○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도모를 통한 경주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다. 시행방법 및 기간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 기 간 : 2014. 12. 22. ~ 2021. 12. 31.

라. 추진경위

○ '14. 12. 22. :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4-464호)

○ '16. 10. 3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경주시 고시 제2016-186호)

- 경계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 '17. 12.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경주시 고시 제2017-186호)

- 사업기간 변경

○ '19. 03.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경주시 고시 제2019-31호)

- 사업시행자주소 및 사업기간 변경

○ '19. 05. 1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134호)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마.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 성 기 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계	1,739,210	-	359,020	359,020	-	1,739,210	1,739,210	2014. 12. 22. ~ 2021. 12. 31.	(주) 동경주 산업 개발 대표 이사 김종율 외 26개사
산업시설 구역	1,162,010	-	270,410	270,410	-	1,162,010	1,162,010		
지원시설 구역	74,070	-	74,070	74,070	-	74,070	74,070		
공공시설 구역	269,715	-	14,540	14,540	-	269,715	269,715		
녹지구역	233,415	-	-	-	-	233,415	233,415		

- 산업시설구역(1,162,010㎡)은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분류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상의 산업시설용지(1,092,010㎡)와 공공시설용지 중 폐기물처리시설(70,000㎡)임
- 산업단지계획 상의 산업시설 용지(1,092,010㎡) 중 사업시행자 사용부지(891,600㎡)는 분양면적에서 제외
- 공공시설구역(269,715㎡) 중 분양현황(14,540㎡)은 노외주차장임
- 녹지구역(233,415㎡)은 산업단지계획의 공공시설용지 중 녹지(201,025㎡)와 공원(32,390㎡)임

※ 산업시설구역 최소 분양(분할) 면적은 1,650㎡임.

바. 입주현황(계획)

구 분	입주업체수 (개)			면 적 (㎡)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계	47	20	9	76	1,051,400	74,070	125,150	1,250,620

구 분	입주업체수 (개)			면 적 (㎡)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현재	-	-	-	-	-	-	-	-
향후	47	20	9	76	1,051,400	74,070	125,150	1,250,620

※ 입주업체는 산업단지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및 입주계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는 산업시설구역의 재생산업시설용도(40,610㎡), 폐기물처리시설용도(70,000㎡)와 공공시설구역의 노외주차장(14,540㎡) 입주업체임

사.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현 황	시행기관
교 통	• 국도31호선(울산~포항) 3.2km, 국도7호선(울산~경주) 12.0km, 동해안고속도(부산~포항) 동경주I.C 22.3km, 남경주I.C 22.5km,	
도로	• 산업단지 내 35개노선, B = 8~24m, L = 222,635m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1개노선, B = 20m, L = 4,000m • 국도31호선에 입체교차로(교통광장) 설치계획, 입체교차로에서 별도 계획된 진입도로(시도15호선 포함)를 이용하여 진입	사업시행자
주차장	• 노외주차장 6개소 : 14,540㎡	사업시행자
녹지 및 공원	• 녹지 18개소 : 201,025㎡ • 공원 4개소 : 32,390㎡	사업시행자
용 수	• 양남면 수렴리 관성교까지 기 매설되어 있는 상수관로(D=350mm)에서 분기하여 사업부지까지 송수관로(D=200mm, L=7.5km)를 통하여 인입 • 배수지 1개소 : 4,240㎡ (배수탱크 : 700Ton/일*2지) • 용수 수요량 : 2,277㎥/일 (공업용수 1,633㎥/일, 생활용수 644㎥/일)	사업시행자

시설명	현 황	시행기관
오·폐수	• 오·폐수는 단지내 오수관로(D=300mm, L=22.8km)로 차집(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후 인입) 후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완충저류지를 거쳐 수렴천으로 방류 • 오수처리시설 1개소 : 4,470㎡(Q=1,500㎥/일) • 발생량 : 1,252㎥/일 (오수량 513㎥/일, 폐수량 739㎥/일)	사업시행자
저류시설	• 저류시설 2개소 : 23,830㎡	사업시행자
전 력	• 설비용량 : 88,932kVA (산업시설 80,290kVA, 일반시설 8,642kVA) • 최대부하 : 67,498kW (산업시설 59,720kW, 일반시설 7,778kW)	한국전력공사
통 신	• 수요량 3,839회선 (산업시설용 2,730회선, 지원시설용 223회선, 기타 공공시설 및 여유량 886회선)	통신사업자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 70,000㎡ • 산업단지내 폐기물 발생량 : 305.928ton/일 (생활 1.138ton/일, 사업장 304.790ton/일(지정 75.771ton/일)) • 폐기물 중 가연성, 재활용 및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 불연성 폐기물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매립 • 매립시설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운영·관리 ※ 지정폐기물 반입 금지	입주기업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 울산·경주(양남, 양북)지역의 산재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계획적인 시설설치 운영

○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내실화

○ 지원 및 공원·녹지 시설 확보하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친환경 조성

○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나. 세부관리계획

○ 관리대상 산업단지 면적 (단위 : ㎡)

구분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면적	1,739,210	1,162,010	74,070	269,715	233,415	

○ 입주대상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기타 제품 제조업(C33)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관리기본계획 상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와 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상기 주요 유치업종으로 입주하는 업체의 건축물 지붕에 한함)(D35)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임.

○ 입주업체자격

- 산업시설구역 :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 제1호 및 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 및 입주기업체(폐기물 수집, 운

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단,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주요 유치업종으로 입주하는 업체의 건축물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하는 업체의 건축물 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 주차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노외주차장에 한함)

○ 입주업체제한

•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산업단지 승인 시 입주제한에 저촉되는 업종
•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
(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대상 업종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
(단,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미만 유지·관리 업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업체
(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업체(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업체는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 보관 및 저장하는 업종

(단, 제조공정상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보관하다가 위탁 처리하는 업종은 제외)
- 기타 상기 시설 이외에 인접 시설 등에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판단한 업종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입주우선순위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분할할 경우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1,650㎡ 이상(공장등록 완료후 가능)이어야 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에는 고정식 구조물(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 시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최초(분양, 경매, 매매, 기타) 취득이 불가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충족 시 관리공단 등을 설립하여야 함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시 산업단지 내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다.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단위 : ㎡, %)

구분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면적 (구성비)	1,739,210 (100.0)	1,162,010 (66.8)	74,070 (4.3)	269,715 (15.5)	233,415 (13.4)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도(별첨 1), 용도구역별 면적표(별첨 2)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 %)

구분	계	공장 시설용도	지식산업 시설용도	재생산업 시설용도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비 고
면적 (구성비)	1,162,010 (100.0)	1,051,400 (90.5)	-	40,610 (3.5)	70,000 (6.0)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건축물 포함)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단,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주요 유치업종으로 입주하는 업체의 건축물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제7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 입주업체 지원 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입주하는 업체의 건축물 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 하수처리시설 및 노외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공공업무, 관리 및 시설의 운영을 위한 건축물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마. 업종별 배치 계획 (단위 : 개, ㎡)

구분	계		현재		향후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50	1,162,010	–	–	50	1,162,010	
공장시설용도	47	1,051,400	–	–	47	1,051,400	
비금속 광물제품(C23)	3	91,280	–	–	3	91,280	
1차 금속(C24)	10	123,750	–	–	10	123,750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7	300,830	–	–	7	300,8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3	28,150	–	–	3	28,150	
기타 기계 및 장비(C29)	8	207,940	–	–	8	207,940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4	51,940	–	–	4	51,940	
기타 운송장비(C31)	5	162,590	–	–	5	162,590	
기타 제품(C33)	7	84,920	–	–	7	84,920	
재생산업시설용도	2	40,610	–	–	2	40,610	
폐기물처리시설용도	1	70,000	–	–	1	70,000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 3

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기본방향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 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 불가

○ 지원시설 설치계획 (단위 : ㎡, 개)

구 분	용 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블록 수
계획	입주계약 시 지정한 용도	지원시설	74,070	9

○ 지원시설 관리운영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사. 공공시설(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

○ 기본방향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근로자 및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단위 : ㎡, 개)

구 분	용 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블록 수
계획	주차장	노외주차장	14,540	6

○ 공공시설(노외주차장)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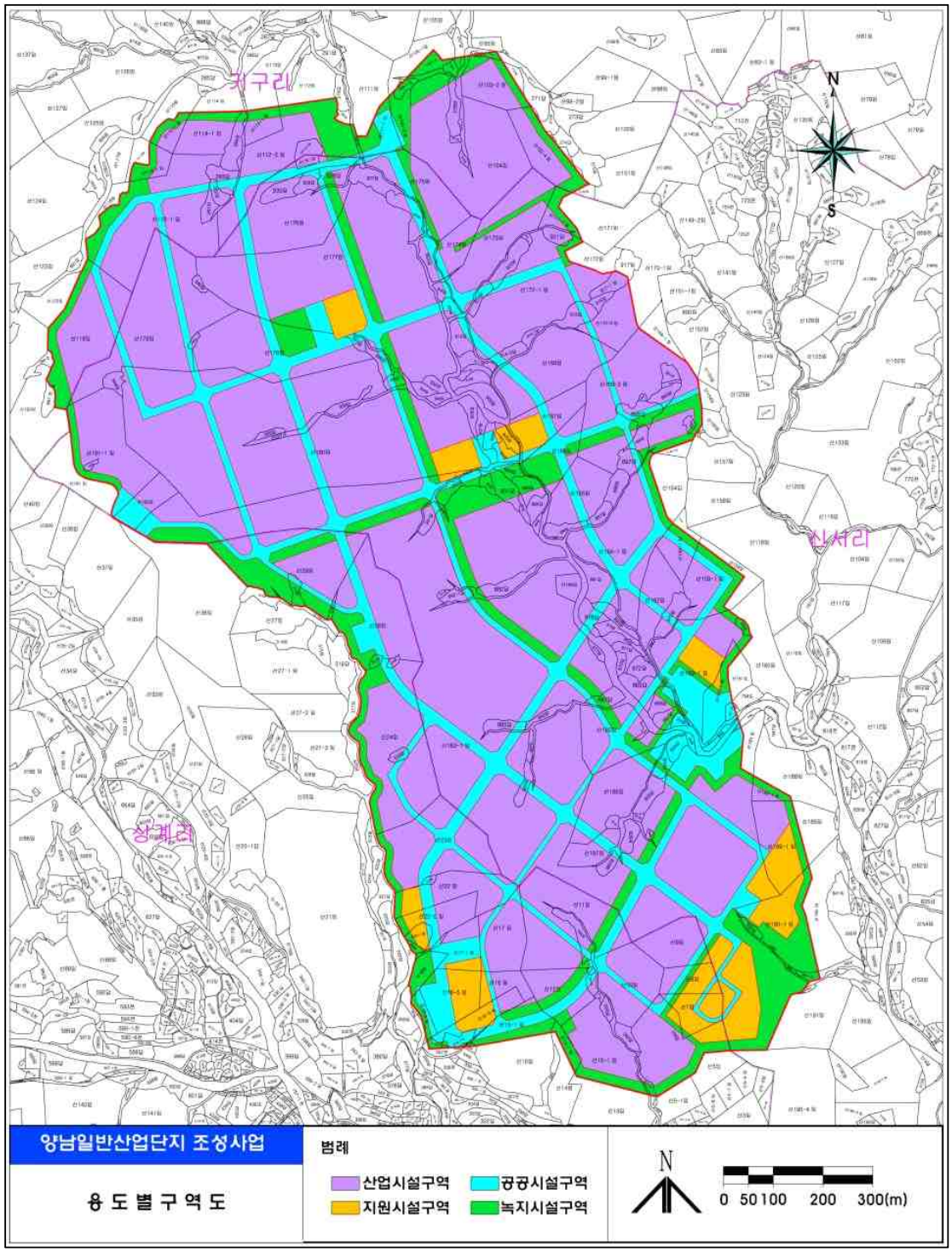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노외주차장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허가, 신고 포함)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아.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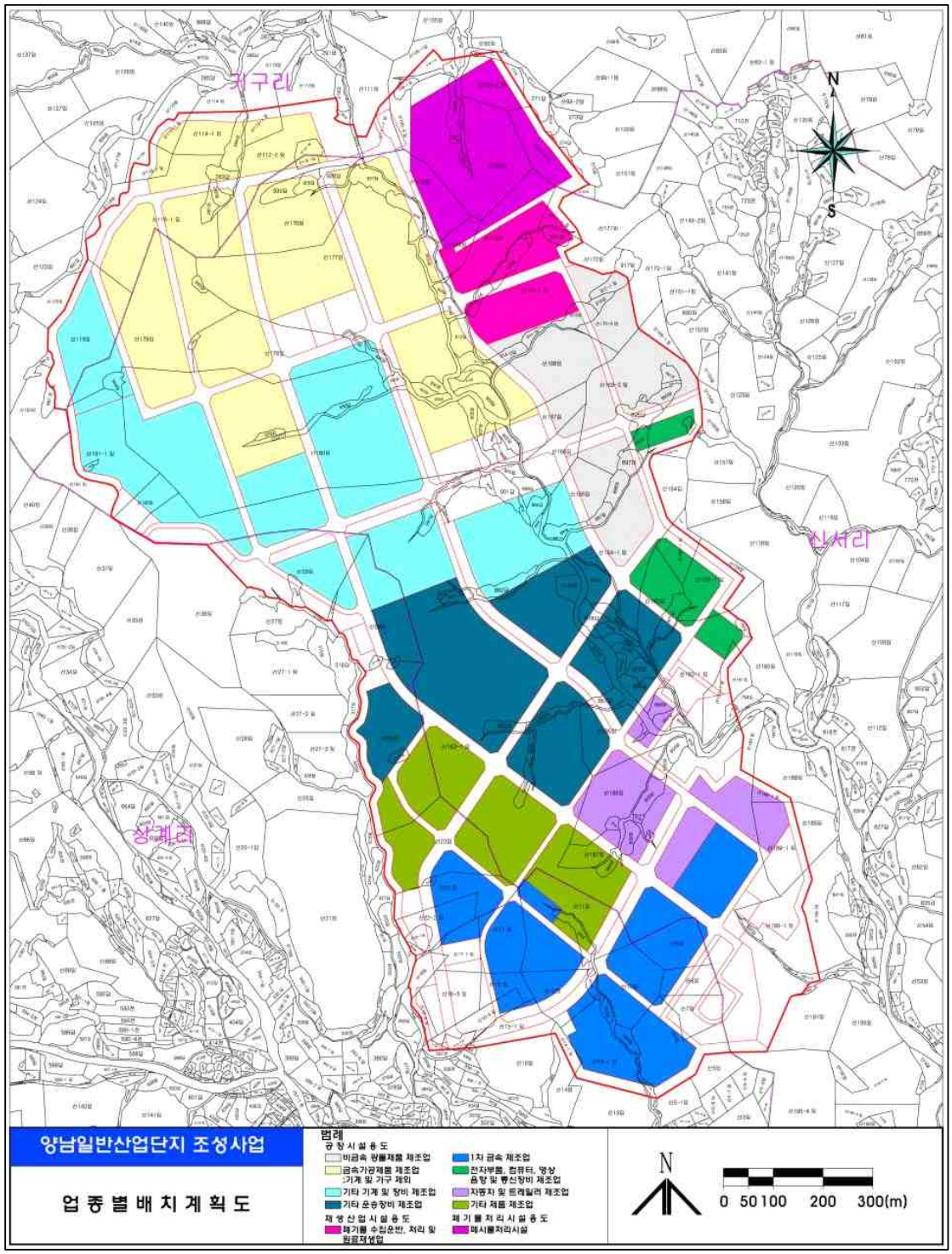
별첨 1 : 용도별 구역도


N
S
양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 도 별 구 역 도
범례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N
0 50100 200 300(m)

별첨 2 : 용도구역별 면적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계		1,739,210	100.0
산업시설구역	소 계	1,162,010	66.8
	공장시설	1,051,400	60.5
	재생산업시설	40,610	2.3
	폐기물처리시설	70,000	4.0
지원시설구역	소 계	74,070	4.3
	지 원 시 설	74,070	4.3
공공시설구역	소 계	269,715	15.5
	도 로	222,635	12.8
	주 차 장	14,540	0.8
	오수처리시설	4,470	0.3
	저 류 지	23,830	1.4
	배 수 지	4,240	0.2
녹지구역	소 계	233,415	13.4
	공 원	32,390	1.9
	녹 지	201,025	11.5

별첨 3 : 업종별배치 계획도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8. 31.

경 상 북 도 지 사

구분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기간
					주 소	이 름	
당초	지방 하천 (보현천)	교량 설치	〈풍력교〉 · L=88.0m, B=9.0m (하이콤라멘교) ·영구 873㎡ ·일시 2,395㎡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658번지 외 1필지	경북 청송군 청송읍 망미정3길 38	청송 면봉산 풍력㈜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점용-허가일로부터 5년)
변경			〈풍력교〉 · L=88.0m, B=9.0m (합성형라멘교) ·영구 873㎡ ·일시 2,395㎡				
변경사유 : 교량공법 변경에 따른 점용허가 변경							

◈◈◈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525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현지성 및 적시성을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5)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수입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임시보관 장소의 설치 및 변경승인 등

•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과태료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별 구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 안전관리 조치명령

•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지정(개발계획) 변경
-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산업단지의 전환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건설기계 검사 등

*** 시 · 도지사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 규모별 구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 안전관리 조치명령

•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5)

*** 시 · 도지사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무의 삭제·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다.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사무 등 정비(안 별표 1, 4, 5)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사무명 및 조문조항 변경

• 폐기물처리업 허가 · 변경허가, 신고 및 의제 처리 (법 제25조 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폐기물처리업 허가 · 변경

허가, 신고 및 의제 처리 등 (법 제25조 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사무명 및 조문·조항 변경

•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사무명 변경

•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라. 부서명 및 사무 변경사항 조정(안 별표 4)

1) 소관부서 조정

○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검사의 사무

• 축산정책과 → 동물방역과

2) 수임기관 변경

○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검사의 사무

• 가축위생시험소장 → 동물위생시험소장

3.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월 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054-880-2126, Fax 054-880-2149, 이메일 : lgh3087@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현지성 및 적시성을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1, 5)

*** 시·도지사 → 시장·군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

- 수입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임시보관 장소의 설치 및 변경승인 등
-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과태료 부과 · 징수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별 구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 군수에게 위임

•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 군수에게 위임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 안전관리 조치명령

•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 청문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 군수에게 위임

• 지정(개발계획) 변경

•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산업단지의 전환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 국 ·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 인가 전 사용승인

•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 · 청문 및 고시

•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 · 군수에게 위임

• 건설기계 검사 등

*** 시 · 도지사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 규모별 구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 안전관리 조치명령

•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 청문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5)

*** 시·도지사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무의 삭제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다.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ㆍ조항, 사무 등 정비(안 별표 1, 4, 5)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사무명 및 조문조항 변경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고 및 의제 처리 (법 제25조 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고 및 의제 처리 등 (법 제25조 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사무명 및 조문·조항 변경

•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사무명 변경

•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라. 부서명 및 사무 변경사항 조정(안 별표 4)

1) 소관부서 조정

○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검사의 사무

• 축산정책과 → 동물방역과

2) 수임기관 변경

○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검사의 사무

• 가축위생시험소장 → 동물위생시험소장

3.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 「대외무역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지방자치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5. 기타 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협의

나.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별도협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행복과): 별도협의

라. 규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별도협의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재난과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2.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제82조	시장·군수
중소벤처기업과 에너지산업과 공통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시장·군수
중소벤처기업과	2.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군수
민생경제과	1.「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 · 징수 2.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2조의4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라. 둘 이상의 시 · 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같은 법 제12조제2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12조제7항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 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16조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같은 법 제18조의8	
	하.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공급실적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	같은 법 46조의2제1항	
	마. 조합 해산 신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같은 법 제81조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같은 법 제82조	
	아. 청문	같은 법 제83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8조제4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적경제과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 · 징수 바. 신고필증 교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장 · 군수
교통정책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시장 · 군수 (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같은 법 제19조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20조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1조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 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시장 · 군수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 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 · 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 ·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군수(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 · 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시행규칙 제8조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시장 · 군수(SOFA 자동차에 대해서는 칠곡군수를 말한다)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같은 법 제83조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같은 법 제83조2항(같은 법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4. 일반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 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 완료시설 확인	같은 법 제38조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9조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마.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 · 설비의 시정 명령	같은 법 제42조	
	사. 위치 · 규모 및 구조 · 설비 변경 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3조	
	아.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자.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47조	
	카.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5조에서 준용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파. 휴업 · 폐업허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 보고 · 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거. 면허 · 인가 · 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처분 등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너. 청문	같은 법 제86조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러. 과태료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94조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나. 유상운송허가 · 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등록대상 사업 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 · 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같은 법 제13조	시장 · 군수
	사. 사업양도 · 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 · 양수인가 제한,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상속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 ·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너. 과태료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94조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5조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바.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계획변경 명령	같은 법 제8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86조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카. 과태료부과 · 징수	같은 법 제94조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44. 자동차경매장 개설 · 운영 승인	같은 법 제60조제1항	
	45.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4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47.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가. 운송비용전가금지에 대한 조사·보고 등	같은 법 제17조	
	나. 보고·검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48.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61조제1항	
	49.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 관련 보고·검사		
외교통상과	1. 시 · 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 · 군수
	2.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3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자치행정과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 2항	시장 · 군수
회계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시장 · 군수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일반재산의 처분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문화산업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 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1.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2.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3.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4.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5.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 · 폐기 6. 청문 7. 수수료 8.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4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장·군수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 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 · 협의 처분 건)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농식품유통과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2. 시료 수거 등 3.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4. 과태료 부과 · 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시장·군수
친환경농업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촌활력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 · 군수
축산정책과	1. 보호가축의 지정 · 고시 2.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축산법」 제8조제1항 「축산법」 제11조	시장 · 군수
동물방역과	1.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 · 감독 2.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3.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8조	시장 · 군수
환경정책과	1. 대기오염, 소음 · 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다음 사항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중요사항 변경을 포함 한다)의 제출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 신고 및 의제 처리 등 4) 폐기물 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5)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6)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부여 7) 폐기물 재위탁 승인 8) 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 · 진동관리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7호 · 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 ·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 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제30조	시장 ·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9)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 · 징수 · 취소(시 · 군 수입) 및 가중 · 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의3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제3항	
	바. 휴업 ·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59조의2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감경,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 · 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이하로 배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 접수 · 수리, 권리자에 통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같은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항 ·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제22조 및 제23조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같은 법 제40조제8항·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 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양수·인수·합병 등 경우 허가, 관계기관 협조 등	같은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및 제66조, 별표 17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의3제2호라목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퍼.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에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및 39조의3	
	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금 신청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니.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반입재개 신청 접수 및 통보	같은 법 제47조의2	
	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66조	
	9.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제1항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8조	
	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제1항	
	10.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		시장·군수(팔공산 도립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	「자연공원법」 제3조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관리	같은 법 제19조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같은 법 제20조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3조	
	마. 공원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24조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같은 법 제37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카.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하. 대집행	같은 법 제31조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너. 허가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71조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러. 공원별 보전 · 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7조의2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3조	
	버.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 제73조의2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나. 허가조건 부여, 허가증교부(재교부), 허가기간 연장,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승인 서교부, 승인사항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마. 건설폐기물의 재위탁금지 예외인정	같은 법 제23조	
	바. 과징금의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같은 법 제27조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8조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신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파.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하. 휴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 · 점검 등	같은 법 제33조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제26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제45조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 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같은 법 제45조·제46조	
	러. 청문	같은 법 제57조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다. 공회전 단속업무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조례 제10조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14.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환경안전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3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제1항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같은 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6조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차.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7조	
	카.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3. 연료의 공급 · 판매 · 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2조	군수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제43조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같은 법 제44조 · 제45조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 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 제4항	
	11. 하천 · 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 제2항	
	12. 하천 · 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같은 법 제21조제1항	
	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21조의2	
	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	같은 법 제56조제1항 · 제2항	
	15.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제2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6.「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24조의2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라. 청문	같은 법 제30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맑은물정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시장·군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 · 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	
산림자원과	1. 산림기술자 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장·군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도유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원의 배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같은 법 제6조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의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같은 법 제13조의2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같은 법 제13조의3	
	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3조의4	
	마. 보호수 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13조의5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같은 법 제13조의6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9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 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 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 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의 대집행 등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징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같은 법 제24조	
	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8.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 · 지원 및 선발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제3항	
	나. 독림가(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 · 지원 및 선정 취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 제3항	
산림산업과 관광과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시의 읍 · 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 제3조	시장 · 군수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공통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 · 군수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 제3항 및 제52조제1항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및 제52조제1항	
보건정책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 ·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의약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약사법」 제31조제5항	시장 · 군수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약사법」 제45조제1항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 · 재발급, 반납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및 제103조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약사법」(법률 제1491호) 부칙 제4조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6조제2항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 ·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8. 동 휴 · 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	
	9. 마약류의 사고보고	같은 법 제12조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같은 법 제13조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 ·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44조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제3항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같은 법 제8조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같은 법 제29조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1조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 ·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아. 개발한 토지 · 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38조제1항 · 제10항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제1항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 · 고시(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8조	
	카. 법 제13조의4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6조	
	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우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주요 유치 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의 매각 ·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 · 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 · 유지 ·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	시장 · 군수(「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3.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 영일만2)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지방자치법」 제17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장 · 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제7조제2항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같은 법 제7조의4	
	다.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3조제3항	
	라. 산업단지의 전환	같은 법 제13조의2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제3항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같은 법 제21조제2항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같은 법 제26조제3항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37조제5항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제1항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같은 법 제48조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4.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정한다)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으로 한정한다)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타. 사방설비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더. 사회복지시설 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버. 광장(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 · 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으로 한정한다) 서. 하천(「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으로 한다) 어. 공공공지 저. 전기공급설비 처. 장사시설 커. 저수지 터. 가스공급설비 퍼. 방수설비 허. 유수지 고. 폐차장 노. 청소년수련시설 도.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모. 자동차정류장 보. 열공급설비 소. 방송 · 통신시설 오. 공동구 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초. 종합의료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경미한 도시 · 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결정 및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5항 · 제6항	
	6.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88조제9항	
	7.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53조	
	9.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를 포함한다) · 고시 · 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10.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도시 · 군계획	같은 법 제98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	
	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	
	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1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17.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18.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19.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같은 법 제50조	
	20.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21.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22.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23.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24.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25. 국 · 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6.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	
	27.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28.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29.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30.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17조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 · 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대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32.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 · 군에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34.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시장 군수 시행사업을 제외한다)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 (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 (법률 제6853호) 부칙 제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조에 따른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47조 및 제55조	
	3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보고, 공고	같은 법 제61조	
	3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같은 법 제76조의2	
	37. 감독 및 감사 등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	
	38.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330만㎡미만 사업으로 한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39.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공기관 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40.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	같은 법 제20조	
	41.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	
	42.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같은 법 제24조	
도로철도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및 제74조	시장 · 군수
	2. 권한의 위임 · 위탁	같은 법 제110조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4.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같은 법 제33조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40조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 · 관리 등	같은 법 제31조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100조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같은 법 제83조	
	12. 건설기계 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5조	
	14. 등록의 말소	같은 법 제6조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같은 법 제7조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도로법」 제81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같은 법 제14조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5조	
	다. 협의	같은 법 제16조	
	라. 계약의 체결	같은 법 제17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2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제28조	
	18. 미불용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 번호표 재부착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같은 법 제17조	
	21.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 명령 등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23.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2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같은 법 제34조의2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44조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도로법」 제51조 및 제52조	
	27. 원인자 부담금	같은 법 제91조	
	28.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29.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94조	
	30.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31.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33. 건설기계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 축 디 자 인 과	1. 감리자의 지정 · 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24조	시장 · 군수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같은 법 제16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다음 권한		
	가.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 · 표시 · 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제1호	
	나. 2 이상의 시 · 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 · 표시 · 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같은 법 제3조의2제2호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 천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하천법」 제5조제2항	시장 · 군수
	2. 하천의 구조 · 시설 및 유지 · 보수 등의 기준	같은 법 제13조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같은 법 제14조	
	4. 하천수의 사용 · 관리 및 기록 보관	같은 법 제52조	
	5. 하천공사 및 유지 · 보수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7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같은 법 제30조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제1항 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를 포함한다) 취입보, 하천복개는 제외한다) 및 고시	같은 법 제33조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36조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같은 법 제38조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7조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명령 권한	같은 법 제72조 및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같은 법 제90조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같은 법 제75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46조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같은 법 제47조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8조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91조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 · 징수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 · 방해	같은 법 제98조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규정에 의거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한정한다 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 변경계획 수립 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청구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다. 보상금액의 산정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너지산업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 해임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 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 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전기사업법」 제7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 · 군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 · 군수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4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의 사업소 내 전보권(본소와 지소간은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사업소장
동물방역과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과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한정한다) 1. 공원구역 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2.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3.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4.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5.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6. 금지행위의 단속 7.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자연자원의 조사 10.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11.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12. 부당이득금의 징수 13.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14. 대집행 15.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6. 허가에 관한 협의 17.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9.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0. 주민지원사업 21.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22.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및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3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철도과	1.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2. 도로표지 정비 3.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 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북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5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투자유치실	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정책과	1.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 바. 시정명령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 자. 청문실시 차. 과태료 부과·징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정책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질관리법」 제1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6조	
환경안전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다.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	같은 법 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 명령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8호	
	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9호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0호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제63조제1항제16호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환경안전과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ㆍ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2조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1항ㆍ제2항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2항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시행령 제67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7항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45조제4항	
	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82조	
	바. 청문	같은 법 제85조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	같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2호ㆍ제13호	
	나. 청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4호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7조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8.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라. 청문	같은 법 제30조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7조	
보건정책과	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나. 의료보수의 신고	같은 법 제45조	
식품의약과	1. 마약류 도ㆍ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ㆍ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부터 제12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러. 청문	같은 법 제45조	
	머.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변경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	
	다. 보고 지시와 검사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제1항	
	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바.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자.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76조제1항	
	차. 청문	같은 법 제77조	
	카. 약사감시원 등 임명	같은 법 제78조	
	타. 허가증 갱신	같은 법 제80조	
	파.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도시계획과	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	제92조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	같은 법 제98조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7조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도시계획과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의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13조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	같은 법 제26조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29조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	같은 법 제46조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	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제3항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제1、3、4항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제3항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제2항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같은 법 제74조제1항	
	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같은 법 제75조	
	어. 청문 실시	같은 법 제76조	
	5.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나.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전환 및 고시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다. 실시계획 협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1항, 제21조 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준공인가 및 공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같은 법 제37조제8항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같은 법 제38조	
	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4	
	차.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6조	
	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7조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ㆍ고시	같은 법 제48조	
	파. 산업단지계획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9조, 제10조, 제15조	
	6. 기초조사의 실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같은 법 제6조제3항	
	8.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권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설립 인가 취소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5항	
	다. 관리업무의 위임ㆍ위탁	같은 법 제31조제1항	
	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승인, 고시 및 운영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부터 제4항, 제33조의2제3항	
	마. 입주계약의 체결 및 해지	같은 법 제38조, 제42조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사.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48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5조제3항	
	9.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10.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건축디자인과	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가.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제16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협의	같은 법 제17조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같은 법 제19조	
	라. 주택의 감리 등	같은 법 제24조	
	마.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4조의3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2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토지정보과	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정공부의 반출 승인 다. 지정공부의 복구 라. 도면의 재작성 승인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 바. 축척변경의 승인 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자.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에너지산업과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 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 타. 청문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혜업의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12조제2항	
	마. 과징금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13조제3항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 운송 · 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 · 판매소 · 저장시설의 폐쇄 · 철거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	
	사. 보고명령 및 검사 · 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아. 청문	같은 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 · 징수(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9조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33조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	같은 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 · 시료채취	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	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49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나. 허가 · 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같은 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 · 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3항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15조제6항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같은 법 제15조제7항	
	자. 완성검사	같은 법 제16조제3항	
	차. 임시사용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4항	
	카. 용기 등의 검사	같은 법 제17조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같은 법 제18조	
	파. 위해 방지조치 등	같은 법 제24조	
	하. 청문	같은 법 제35조의3	
	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 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중 석유판매 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의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7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중소벤처기업과	1. (생략)	(생략)	시장·군수
⋮	⋮	⋮	⋮
외교통상과	1. (생략) (신설)	(생략)	시장·군수
⋮	⋮	⋮	⋮
환경정책과	1. ~ 7. (생략) 8. (생략) 가. (생략) 1) ~ 2) (생략)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처리 4) ~ 9) (생략) (신설) 나. ~ 니. (생략)	(생략) (생략)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생략) (생략)	시장·군수
	(신설)		
	9. ~ 10. (생략)	(생략)	

개 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중소벤처기업과 에너지산업과	1. (현행과 같음) - 에너지산업과와 공통 -	(현행과 같음)	시장·군수
⋮	⋮	⋮	⋮
외교통상과	1. (현행과 같음) 2.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수입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3호, 제4항	시장·군수
⋮	⋮	⋮	⋮
환경정책과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신고 및 의제처리 등 4) ~ 9) (현행과 같음) 10)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등 나. ~ 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3조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현행과 같음)	시장·군수
	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9. ~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1. (생략) 가. ~ 버. (생략) (신설)	(생략) (생략)			11. (현행과 같음) 가. ~ 버. (현행과 같음) 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5	
⋮	⋮	⋮	⋮		⋮	⋮	
환 경 안전과	1. (생략) 2. (생략) 가. ~ 차. (생략) (신설) 3. ~ 15. (생략) (신설)	(생략) (생략) (생략)	시장·군수	환 경 안전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사업자의 자가 측정 결과 보고 3. ~ 15. (현행과 같음) 1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라. 청문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39조 제3항 (현행과 같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	시장·군수
⋮	⋮	⋮	⋮	⋮	⋮	⋮	⋮
사 회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 건 정책과	1. ~ 6. (생략)	(생략)	시장·군수	아 이 세 상 지원과 여 성 가 족 행복과 사 회 복지과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보 건 정책과	1. ~ 6. (현행과 같음) - 아이세상지원과, 여성가족행복과 공통 -	(현행과 같음)	시장·군수
⋮	⋮	⋮	⋮	⋮	⋮	⋮	⋮

현 행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일 기관
도 시 계획과	1. ~ 2. (생략) (신설)	(생략)	시장군수

개 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일 기관
도 시 계획과	1. ~ 2. (현행과 같음) 3. 대도시에 대한 특례법 적용 이전에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포항시-영일만,영일만2) 가. 지정(개발계획) 변경 나. 산업단지 지정 등의 고시 등 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 라. 산업단지의 전환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 사.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아.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자.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차.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파.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7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	시장군수

현 행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 42. (생략)	(생략)	
도 로 철도과	1. ~ 32. (생략) (신설)	(생략)	시장군수
⋮	⋮	⋮	⋮
축 산 정책과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위생시험소장 (지소장을 포함한다)
⋮	⋮	⋮	⋮

개 정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너. 산업단지의 관리권에 관한사항 4. ~ 4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 로 철도과	1. ~ 32. (현행과 같음) 33. 건설기계 검사 등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시장군수
⋮	⋮	⋮	⋮
동 물 방역과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장을 포함한다)
⋮	⋮	⋮	⋮

현 행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에너지산업과	1. ~ 5. (생략)	(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	⋮	⋮
환경안전과	1. (생략)	(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차. (생략)	(생략)	
	카.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1호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신설)	(생략)	
	3. ~ 7. (생략)(신설)	(생략)	
⋮	⋮	⋮	⋮

개 정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에너지산업과	1. ~ 5. (현행과 같음) - 토지정보과 다음으로 위치 조정 -	(현행과 같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	⋮	⋮
환경안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카. (삭제)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	(현행과 같음)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	
	3.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다.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시료채취, 서류 및 시설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라. 청문	같은 법 제30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	⋮	⋮	⋮

관계법령 발췌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4. 5., 2013. 3. 23., 2013. 7. 30.〉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59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3. 7. 30., 2020. 3. 18.〉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9. 11. 26.〉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9. 24., 2017. 12. 27.〉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9. 24., 2013. 7. 19., 2018. 5. 17.〉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3호에 따른 폐가전제품을 분리、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자
3.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4.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7. 12. 27.〉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 9. 24.〉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9. 24.〉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⑥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이나 폐기물처리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9. 24.〉

[제목개정 2012. 9. 24.]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3. 7. 19., 2019. 12. 20.〉

1.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7. 19.〉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7.〉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12., 2015. 12. 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 6. 12.〉

4. 삭제 〈2013. 6. 12.〉

5. 삭제 〈2013. 6. 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 6. 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 6. 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6. 12., 2019. 4. 16.〉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6. 1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5. 31.〉 [전문개정 2008. 12. 24.]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40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생략)

②(생략)

③ 시·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

②(생략)

③(생략)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37조(과태료)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⑤ 삭제 〈2012. 2. 1.〉

⑥ 삭제 〈2012. 2. 1.〉

⑦ 삭제 〈2012. 2. 1.〉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 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5. 9. 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4. 6.]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나.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⑤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

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 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2014. 1. 14., 2015. 9. 1., 2018. 12. 31., 2019. 12. 10.〉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⑤ 삭제 〈2014. 1. 14.〉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②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

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2. 6. 1., 2016. 12. 20.〉

④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6. 1. 27., 2016. 12. 27., 2017. 1. 17., 2019. 12.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19.「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5.「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7.「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8.「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

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9호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 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2015. 9.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목에서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7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 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자.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제46조의6제4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전문개정 2011. 8. 4.]

부 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적용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의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본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시장의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시·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
3.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제4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나목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폐지의 합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21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장、군수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 정 2014. 12. 30.,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 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4. 12., 2014. 12. 30.,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⑨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2012. 2. 22.〉

⑩ 제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입·검사·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4. 25.〉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지정하고, 그 밖에 법령 불일치 조문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 첨부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임군호 (054-880-2125)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공고기간 : 2020년 8월 31일 ~ 9월 14일(15일)

2.공고방법 :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3.공고의 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가. 당사자 및 위반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처분 사유	근거 법령
부동산개발업 (경북140013)	㈜케이에스건설 (전규만)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157번길 7-2	등록취소 (2020.8.24.)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미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부동산개발업 (경북170015)	서정개발 주식회사 (박윤상)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60-92	등록취소 (2020.8.24.)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미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나.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납

다.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라.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토지정보과(054-880-40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381	수정정보통신 (김상기)	경북 상주시 상서문3길 9, 1층(낙양동)	2020.08.26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6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내용 -

업종명 (등록번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보유기술자
전문감리업 경북 제2020-6470000 -86-22-00003호	㈜어담기술단 (171111-0046079)	이진호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649-9, 2층(송현동)	특급감리원 1명(김기백) 초급감리원 1명(이진호)

※ 등록일자 : 2020년 08월 27일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8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8. 31. ~ 2020. 9. 14.(14일간)

3. 처분내용 : 사업정지 60일(3차 위반)

4. 위반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처분일
태경로지스틱스(주)	한*석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3*번길 **	등록기준 미달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정지 60일 ('20. 9. 15. ~ 11. 13.)	2020. 9. 15.

5. 안내사항

-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2020. 11. 13.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3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교통정책과(☎ 054-88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3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382	㈜다온넷 (손영식)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74-16 101동 104호(성조타운)	2020.08.27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44호

2020년 경상북도 재정공시(결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우리 도의 2019년도 살림규모는 11조 9,79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7,6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조 3,452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54천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조 8,040억원이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8,303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도의 채무는 1조 4,121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529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외 4,104,567건(3,108억 원)을 취득하고, 건물 외 499건(10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조 6,114억원 규모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유사지방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살림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의존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자치단체 부채, 지방공기업 현황, 주민의 주요 관심항목 등을 공시하였습니다.

❖ 특수공시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된 주요 사업으로

○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사업,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을 공시하였습니다.

※ 2020년 경상북도 재정공시 세부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분야별정보 → 재정정보 → 재정공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경주시 고시 제2020 - 237호

경주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 및 진입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블루모아골프장 및 진입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31.

경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3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

나. 명 칭 : 블루모아골프장 개발사업 및 진입도로(중로3-천1호선) 개설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골프장(변경)

○ 면적 : 기정 - 2,008,860㎡, 변경 - 1,814,920㎡(감 193,940㎡)

○ 규모 : 기정 - 회원제 27홀 골프장, 변경 - 대중제 24홀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허가 포함)

나. 진입도로(신설)

○ 중로3-천1호선 : B=13~20m, L=391m(A=5,79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골프장(변경없음)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 성 명 : ㈜태영건설 이재규 외1인

나. 진입도로(신설)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 성 명 : ㈜태영건설 이재규 외1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골프장(변경)

○ 기정 - 인가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변경 - 인가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나. 진입도로(신설)

○ 인가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 임] 참조

7.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관계 서류는 경주시 도시계획과에 두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4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블루모아골프장(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801,791	2,698,717	2,008,860	1,814,920					
1	천북	성지	산2-5		임	24,132		5,23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주)태영건설			
2	천북	갈곡	산1-3		임	69,025		5,454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3	천북	갈곡	산1-5		목	9,917		4,469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4	천북	화산	산25	산25	임	373,011	373,011	50,995	50,378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5	천북	화산	산 25-1	산 25-1	목	144,794	144,794	128,271	128,401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	천북	화산	산 33-3	산 33-3	목	1,055,608	1,055,608	1,033,756	866,667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7	천북	화산	산 33-4	산 33-4	임	3,570	3,570	3,570	3,57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주)태영건설			
8	천북	화산	산 33-5	산 33-5	임	142,810	142,810	142,810	142,81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9	천북	화산	산 33-8	산 33-8	목	1,785	1,785	1,785	1,785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0	천북	화산	산 33-9	산 33-9	목	19,830	19,830	19,830	19,83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1	천북	화산	산 33-10	산 33-10	목	19,830	19,830	19,830	19,83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2	천북	화산	산 33-11	산 33-11	임	195,773	195,773	195,773	195,773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3	천북	화산	산 33-12	산 33-12	목	19,835	19,835	19,835	19,835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	천북	화산	산34	산34	임	35,702	35,702	35,702	35,7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주)태영건설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5	천북	화산	산35	산35	임	17,851	17,851	10,800	8,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주)태영건설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6	천북	화산	산 36-1	산 36-1	임	32,020	32,020	3,194	2,7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주)태영건설			
17	천북	화산	산40	산40	임	388,363	388,363	103,822	98,092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18	천북	화산	산 40-1	산 40-1	목	247,935	247,935	223,729	221,343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나. 중로3-천1호선(신설)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동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계					1,716,038	5,792					
1	천북	성지	산2-5	임	24,132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주)태영건설			
2	천북	화산	산33-3	목	1,055,608	3,416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3	천북	화산	산40	임	388,363	1,423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4	천북	화산	산40-1	목	247,935	923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73	(주)태영			

경주시 고시 제2020 -238호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일원의 녹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21-5번지 일원

다. 면 적 : 139,6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동부아이앤씨(주)가 추가 공장용지 수요발생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

○ 낙후된 경주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 도모

○ 경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 신규 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7-6번지

나. 성 명 : 동부아이앤씨(주) 대표 최강곤 외 4개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당초. 2011. ~ 2020. 6. 30

변경. 2011. ~ 2021. 6. 30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8.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게재생략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김천시 고시 제2020-99호

김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변경) 및 고시(변경)

김천시 고시 제2013-1747(2013. 12. 19)호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2020. 8. 31.

김 천 시 장

1. 사 업 명 :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2.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사업

나. 명 칭 :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

4. 면적 및 규모

가. 전체사업구역면적 : 143,695㎡

나.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 당초- 124,943㎡, 변경-125,452㎡(증509)

- 변경사유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구 분	면적 및 규모	비 고
계	당초 124,943㎡ 변경 125,452㎡	
도로(소로1-대항3)	당초 7,065㎡ 변경 7,085.4㎡	
주차장(노외주차장)	당초 2,351㎡ 변경 2,273.2㎡	
녹지(경관녹지)	당초 17,437㎡ 변경 23,811.9㎡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당초 2,109㎡ 변경 337.9㎡	
문화시설	당초 95,981㎡ 변경 91,943.6㎡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천시장

나. 주 소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6. 사업기간 : 2013년 실시계획인가일 ~ 2020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8.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관광진흥과(054-420-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등 조서(당초)

□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명칭	
1	대항면 운수리	92	답	2,159	2,159		김천시				
2	대항면 운수리	93	전	2,976	2,976		김천시				
3	대항면 운수리	93-1	전	1,487	1,487		김천시				
4	대항면 운수리	94-1	유지	162	162	향천동 555	이만우				
5	대항면 운수리	94-2	유지	228	228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6	대항면 운수리	94-3	유지	1,894	1,894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7	대항면 운수리	94-4	답	3,785	3,785		김천시				
8	대항면 운수리	95-1	유지	5,620	5,620		금릉군				
9	대항면 운수리	95-2	유지	575	575	향천동 617	김재순				
10	대항면 운수리	96-1	답	36	36	김천시 성내동 208-4	김덕계				
11	대항면 운수리	96-3	답	493	493	김천시 성내동 208-4	김덕계				
12	대항면 운수리	97-1	답	96	96		김천시				
13	대항면 운수리	97-3	답	13	13		김천시				
14	대항면 운수리	98-1	유지	251	251		금릉군				
15	대항면 운수리	98-3	유지	53	53		금릉군				
16	대항면 운수리	99	유지	188	188		금릉군				
17	대항면 운수리	100-1	답	1,984	1,984		김천시				
18	대항면 운수리	100-4	답	745	745		김천시				
19	대항면 운수리	100-5	잡종지	660	660		김천시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명칭	
20	대항면 운수리	100-6	답	190	190		김천시				
21	대항면 운수리	100-8	답	340	340		김천시				
22	대항면 운수리	100-10	답	92	92		김천시				
23	대항면 운수리	100-11	답	702	702		김천시				
24	대항면 운수리	100-12	답	1,239	1,239		김천시				
25	대항면 운수리	101	답	1,660	1,660		김천시				
26	대항면 운수리	102	임야	3,226	3,226		김천시				
27	대항면 운수리	103	답	6,063	6,063		김천시				
28	대항면 운수리	104	답	2,853	2,853	대항면 운수리 391	한희태				
29	대항면 운수리	105	답	2,357	2,357		김천시				
30	대항면 운수리	106	답	2,274	2,274		김천시				
31	대항면 운수리	107	대	760	760		김천시				
32	대항면 운수리	107-1	답	2,563	2,563		김천시				
33	대항면 운수리	107-2	대	300	300		김천시				
34	대항면 운수리	107-3	잡종지	929	929		김천시				
35	대항면 운수리	108	답	4,079	4,079		김천시				
36	대항면 운수리	109	답	99	99		김천시				
37	대항면 운수리	110	답	1,871	1,871		김천시				
38	대항면 운수리	111	답	1,633	1,633		김천시				
39	대항면 운수리	112	과수원	2,155	2,155		김천시				
40	대항면 운수리	113	답	1,808	1,808		김천시				
41	대항면 운수리	115	임야	2,198	2,198	칠곡군석적읍중리141번지3 공단부영아파트109-111	김갑수				
42	대항면 운수리	116	답	165	165		김천시				
43	대항면 운수리	117	과수원	243	243		김천시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명칭	
44	대항면 운수리	117-1	과수원	745	745	대항면 운수리 145-2	진분선				
45	대항면 운수리	118	과수원	2,955	1,286		김천시				
46	대항면 운수리	119	답	2,784	2,559		김천시				
47	대항면 운수리	127	전	2,850	1,080		김천시				
48	대항면 운수리	128-1	답	3,038	176		김천시				
49	대항면 운수리	128-2	답	2,876	11		김천시				
50	대항면 운수리	129	답	1,434	479		김천시				
51	대항면 운수리	129-1	답	1,433	372		김천시				
52	대항면 운수리	129-2	답	1,434	470		김천시				
53	대항면 운수리	129-3	답	198	159		김천시				
54	대항면 운수리	130	전	337	337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55	대항면 운수리	142	임야	159	159	김천시 평화동 303	사우공제흥업 주식회사				
56	대항면 운수리	143-2	과수원	2,089	882		김천시				
57	대항면 운수리	143-3	전	159	72		김천시				
58	대항면 운수리	143-4	대	46	46		김천시				
69	대항면 운수리	144-1	답	1,170	292		김천시				
60	대항면 운수리	144-2	대	202	202		김천시				
61	대항면 운수리	146-9	임야	1,260	1,260	구미시 형곡동 289	김갑수				
62	대항면 운수리	224	답	2,007	1,656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63	대항면 운수리	225	답	2,942	2,942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64	대항면 운수리	226	답	3,326	3,326	대항면 운수리 216	이강식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명칭	
						대항면 운수리 216	김용선				
65	대항면 운수리	227-1	답	5,346	5,346	대항면 운수리 216	이강식				
							김천시				
66	대항면 운수리	227-2	답	833	833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67	대항면 운수리	227-3	답	2,188	2,136	대항면 운수리 12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68	대항면 운수리	235-1	임야	761	761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69	대항면 운수리	235-2	임야	1,388	719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70	대항면 운수리	236-1	답	774	774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71	대항면 운수리	236-2	사적지	2,003	2,003		김천시				
72	대항면 운수리	236-3	답	1,269	1,269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73	대항면 운수리	237	잡종지	185	185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74	대항면 운수리	239	답	767	755	대항면 운수리 216	오인갑				
75	대항면 운수리	240-1	답	63	42		김천시				
76	대항면 운수리	241	잡종지	25	7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김천시 성내동 8-1	김천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77	대항면 운수리	242	대	2,123	1,982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김천시 성내동 8-1	김천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78	대항면 운수리	243	대	66	66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김천시 성내동	김천축산업	근저당권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조계종직지사	8-1	협동조합		
79	대항면 운수리	244-1	답	1,478	1,478		김천시				
80	대항면 운수리	244-2	답	1,398	1,398		김천시				
81	대항면 운수리	245	답	2,274	2,148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김천시 성내동 8-1	김천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82	대항면 운수리	246	답	2,249	1,883	대항면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직지사				
83	대항면 운수리	246-1	답	519	7		김천시				
84	대항면 운수리	248	답	66	27	대항면 운수리 216	양경모				
85	대항면 운수리	1137	구거	8,327	3,230		국(농수산부)				
86	대항면 운수리	1138	도로	1,610	1,580		국(건설부)				
87	대항면 운수리	1155	도로	466	239		국(건설부)				
88	대항면 운수리	산83-1	임야	21,157	116		김천시				
89	대항면 운수리	산83-4	임야	9,322	481		김천시				
90	대항면 운수리	산83-5	임야	11,405	2,910		김천시				
91	대항면 운수리	산83-6	임야	12,298	2,364	상주군 상주읍 신봉동 220	김숙현				
92	대항면 운수리	산83-9	임야	7,041	447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617-1	김영철				
93	대항면 운수리	산83-10	임야	7,736	149		김천시				
94	대항면 운수리	산83-11	임야	16,661	488		김천시				
95	대항면 운수리	산83-34	임야	21,977	407		김천시				
96	대항면 운수리	산83-40	임야	9,492	5,941		김천시				
97	대항면 운수리	산187	구거	1,256	1,057		국(건설부)				
계				251,171	124,943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등 조서(변경)

□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권리			비고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의 종류 및 명칭	
1	대항면 운수리	1188	도	7,085.4	7,085.4		김천시				
2	대항면 운수리	1187	차	2,273.2	2,273.2		김천시				
3	대항면 운수리	1184	공	23,811.9	23,811.9		김천시				
4	대항면 운수리	1183	잡	337.9	337.9		김천시				
5	대항면 운수리	1189	대	18,854.5	18,854.5		김천시				
6	대항면 운수리	1190	유	4,486.7	4,486.7		김천시				
7	대항면 운수리	1191	공	25,341.9	25,341.9		김천시				
8	대항면 운수리	1192	공	10,115.3	10,115.3		김천시				
9	대항면 운수리	1193	대	512	512		김천시				
10	대항면 운수리	1194	답	12,368.7	12,368.7		김천시				
11	대항면 운수리	1195	공	264.7	264.7		김천시				
12	대항면 운수리	1196	공	506.8	506.8		김천시				
13	대항면 운수리	1197	차	2,777	2,777		김천시				
14	대항면 운수리	224-1	답	1,666	1,666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15	대항면 운수리	225	답	2,942	2,942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16	대항면 운수리	226	답	3,326	3,326	운수리 216	이강식외 1				
17	대항면 운수리	227-1	답	3,058	3,058		김천시외 1				
18	대항면 운수리	227-2	답	833	833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19	대항면 운수리	227-5	답	2,127	2,127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20	대항면 운수리	235-1	임	761	761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21	대항면 운수리	235-6	임	734	734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22	대항면 운수리	236-3	답	1,269	1,269	운수리 216	대한불교 조계종				
계				125,452	125,452						

김천시 고시 제2020 - 102호

김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변경) 및 고시(변경)

김천시 고시 제2019-69호(2020. 6. 18.)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이를 고시(변경)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조서

종 류	명칭	위치	사업량	시행자	사업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 (공원)	근린공원	김천시 신음동 산41-1 일원	공원조성 604,231㎡	김천시장	인가일로부터 3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과 같음

3. 변경사유 : 세목고시 누락(토지 및 물건조서, 소유자 및 편입면적 일부 수정)

※ 관계도서는 김천시 원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의처 : 김천시 원도심재생과 신도시개발팀 ☎ 054-420-6484)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합계	163필지			747,277	604,231						
1	신음동	312	전	1,504	12	박○조 (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51 인정프린스아파트 3001-1101				
						박○진 (1/2)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394-3 현대아파트 102-2104				
2	신음동	313	전	2,846	84	김천시					
3	신음동	314	답	2,307	2,307	김천시					
4	신음동	315	대	7,941	1	김천시					
5	신음동	353	전	1,901	867	김천시					
6	신음동	500	전	3,038	3,038	김천시					
7	신음동	502	답	3,045	3,045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8	신음동	503	전	2,126	2,126	안○이 (1/2)	김천시 신음동 1097				
						김천시 (1/2)					
9	신음동	504	전	1,464	1,464	김천시					
10	신음동	507	잡종지	1,479	6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천OO교회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511				
11	신음동	1228	구거	31,394	40	국(국토교통부)					
12	신음동	1253	구거	11,570	1,386	국(국토교통부)					
13	신음동	1304	도로	12,151	11	김천시					
14	신음동	1228-12	구거	171	70	국(국토교통부)					
15	신음동	1245-1	도로	3,265	85	국(국토교통부)					
16	신음동	309-2	전	7,603	3,009	김천시					
17	신음동	315-1	전	50	50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18	신음동	350-2	전	1	1	김○람	경상북도 김천시 무실7길 38, 106동 403호(덕곡동, 주공아파트)				
19	신음동	351-3	묘지	1,137	3	김천시					
20	신음동	352-1	잡종지	2,165	1,967	김천시					
21	신음동	352-2	잡종지	579	579	김천시					
22	신음동	360-1	전	2,483	1,862	김천시					
23	신음동	360-2	답	661	210	김천시					
24	신음동	427-1	도로	271	6	김천시					
25	신음동	440-1	전	1,451	952	김천시					
26	신음동	440-14	도로	152	2	강○직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394-3 현대아파트 104동 2004호				
27	신음동	440-2	전	446	446	진○암	김천시 신음동 1141				
28	신음동	440-4	전	995	995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29	신음동	440-49	전	1,266	1,266	김천시					
30	신음동	440-5	대	380	380	심○임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2길 23(감호동)				
31	신음동	440-51	임야	2,900	2,900	김천시					
32	신음동	440-52	임야	7,653	7,653	김천시					
33	신음동	440-53	임야	5,242	5,242	김천시					
34	신음동	440-57	도로	740	325	김천시					
35	신음동	440-58	도로	937	420	김천시					
36	신음동	440-6	전	2,179	2,179	김천시					
37	신음동	440-60	도로	208	156	김천시					
38	신음동	440-66	전	543	543	김천시					
39	신음동	440-7	대	93	93	진○암					
40	신음동	440-8	전	855	20	이○희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6, 104동 2004호(신음동, 현대아파트)				
41	신음동	440-9	대	185	185	진○암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42	신음동	470-7	도로	2,197	2	김천시					
43	신음동	471-1	대	2,017	1,867	김천시					
44	신음동	471-107	임야	116	116	김천시					
45	신음동	471-135	임야	12,859	12,859	수원○씨 금릉부원군파이장절○장군종회	포항시 용흥2동 614-25번지				
46	신음동	471-95	임야	7,015	6,296	김천시					
47	신음동	471-96	임야	9,626	9,626	김천시					
48	신음동	479-1	대	152	152	김천시					
49	신음동	479-2	대	476	476	김천시					
50	신음동	481-1	전	698	698	백○천 (외 7)	삼락동				
51	신음동	488-6	잡종지	160	20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구 중구 남산동 225-1				
52	신음동	501-1	전	2,456	2,456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53	신음동	501-2	과수원	228	228	김천시					
54	신음동	504-1	임야	3,441	3,441	김천시					
55	신음동	504-2	임야	1,121	1,121	김천시					
56	신음동	504-3	임야	1,441	1,441	김천시					
57	신음동	504-4	임야	648	648	김천시					
58	신음동	505-1	전	946	946	김천시					
59	신음동	506-13	전	557	557	조○택 (1/2)	김천시 신음동 829				
						조○섭 (1/2)	김천시 신음동 491				
60	신음동	507-1	임야	473	473	김천시					
61	신음동	507-2	임야	489	489	김천시					
62	신음동	산 50-2	도로	317	3	김천시					
63	신음동	산159	구거	132	132	국(국토교통부)					
64	신음동	산160	구거	99	99	국(국토교통부)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65	신음동	산161	구거	53	14	국(국토교통부)					
66	신음동	산21-2	임야	6,248	6,248	김천시					
67	신음동	산21-3	도로	314	127	김천시					
68	신음동	산21-4	임야	12,348	12,348	백○학	김천시 부곡동 1529 부곡화성타운 103-406				
69	신음동	산22	임야	10,879	10,879	김천시					
70	신음동	산22-2	도로	553	394	김천시					
71	신음동	산23	임야	4,498	4,498	서○옥 (661/5,950)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245-55				
72	신음동	산25-3	임야	1,190 (1단2무보)	1,190 (1단2무보)	황○연	김천시 신음동 1129				
73	신음동	산27-1	임야	3,868	3,289	김천시					
74	신음동	산28-8	임야	3,115	3,115	김천시					
75	신음동	산37-1	임야	2,281	2,281	김천시					
76	신음동	산37-4	임야	99 (1무보)	99 (1무보)	진○암	김천시 신음동 1141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77	신음동	산38	임야	2,380	2,380	김천시					
78	신음동	산39-1	임야	4,661	4,661	임○환	김천시 성내동 77				
79	신음동	산40	임야	4,165	4,165	김천시					
80	신음동	산41-1	임야	97,683	94,240	김천시					
81	신음동	산42-8	임야	542	171	김천시					
82	신음동	산42-9	임야	1,444	1,444	김○호 (1/3)	김천시 신음동 74				
						김○중 (1/3)	김천시 신음동 74				
						김○숙 (1/3)	김천시 신음동 74				
83	신음동	산48	임야	6,347	6,347	김천시					
84	신음동	산50	임야	7,990	7,990	김천시					
85	신음동	산50-1	임야	6,571	6,571	김천시					
86	신음동	산52-2	임야	11,054	11,054	송○섭 (100/24,893)	신음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감문농업 협동조합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625-2	가압류	
						수원○씨 금릉군부 원군파종 중회 (24,793 /99,572)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18(원백당)				
						수원○씨 금릉부원 군파종 중회 (18,594.75 /24,893)	김천시 삼락동 118(원백당)				
87	신음동	산53-1	임야	16,959	16,959	김천시					
88	신음동	산53-8	임야	68	63	김천시					
89	신음동	산53-9	임야	2,740	2,740	김천시					
90	신음동	산54-1	임야	15,372	13,951	김천시					
91	신음동	산55-6	임야	4,684	4,684	최○현	김천시 신음동 394-3 현대아파트	김천시산 림조합	경상북도 김천시	근저당 권설정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104동 602호		영남대로 2059(덕곡동)		
								김천시산림조합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059(덕곡동)	지상권 설정	
92	신음동	산56-3	임야	3,674	3,674	김천시					
93	신음동	산57-6	임야	793	793	김천시					
94	신음동	산57-8	임야	61,488	61,488	김천시					
95	신음동	산58-1	임야	24,892	24,892	김○길 (1/7)	서울 성동구 자양동 218-7				
						김○연 (1/7)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466-40				
						김○백 (1/7)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218-7				
						김○인 (1/7)	김천시 교동 431				
						김천시 (3/7)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96	신음동	산59-13	임야	1,099	1,099	조○택 (1/2)	김천시 신음동 829				
						조○섭 (1/2)	김천시 신음동 491				
97	신음동	산61-2	임야	171	171	강○수 (800 /2400)	김천시 신음동 1132				
						강○봉 (800 /2400)	김천시 신음동 1154				
						강○준 (800 /2400)	대구 북구 구암동 505				
98	응명동	299	전	405	405	김천시					
99	응명동	672	전	249	249	김천시					
100	응명동	674	전	267	267	김천시					
101	응명동	675	과수원	2,964	2,964	김천시					
102	응명동	681	답	1,675	1,494	김천시					
103	응명동	710	전	202	202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104	응명동	711	과수원	615	615	김천시					
105	응명동	712	전	420	420	김천시					
106	응명동	713	과수원	3,094	3,094	김천시					
107	응명동	715	전	1,881	1,772	김천시					
108	응명동	716	과수원	3,997	3,997	김천시					
109	응명동	717	전	889	558	김천시					
110	응명동	722	전	298 (90평)	298 (90평)	김○태	금릉군 어모면 응명동 176				
111	응명동	746	과수원	2,162	2,051	김천시					
112	응명동	1006	도로	44,060	6,408	김천시					
113	응명동	257-1	전	119	119	김○태	금릉군 감문면 태촌리 561-1				
114	응명동	257-2	답	168	168	김○태	금릉군 어모면 응명동 176				
115	응명동	257-5	전	86	86	김○태	금릉군 감문면 태촌리 561-1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116	응명동	257-6	답	513	513	김○태	금릉군 어모면 응명동 176				
117	응명동	258-1	답	336	336	김천시					
118	응명동	299-1	전	3,024	3,024	김천시					
119	응명동	299-2	전	200	200	김천시					
120	응명동	300-1	과수원	40	40	김천시					
121	응명동	300-2	과수원	147	147	김천시					
122	응명동	300-5	전	205	205	김천시					
123	응명동	673-1	전	1,610	1,610	김천시					
124	응명동	673-2	전	1,378	1,378	박○순	경상북도 김천시 뒷골길 12-4(응명동)				
125	응명동	673-3	과수원	1,412	1,412	김천시					
126	응명동	709-1	과수원	1,433	1,433	김○화	김천시 성내동 210				
127	응명동	718-2	과수원	2,426	2,348	김천시					
128	응명동	719-2	과수원	2,080	2,080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129	응명동	722-1	전	4,380	4,380	김천시					
130	응명동	723-1	답	202	202	김천시					
131	응명동	723-2	전	2,770	2,770	김천시					
132	응명동	723-3	답	902	902	김천시					
133	응명동	723-4	과수원	1,524	1,524	김천시					
134	응명동	724-1	전	2,166	2,166	김천시					
135	응명동	725-11	전	1,659	1,659	이○웅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40, 102동 807호(범어동, 범어청구푸른마을)				
						조○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0길 29, 101동 1206호(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				
136	응명동	725-12	전	1,038	1,038	김천시					
137	응명동	725-13	전	48	48	김천시					
138	응명동	726-1	전	203	203	김천시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139	응명동	727-1	전	168	168	김천시					
140	응명동	728-3	전	111	111	김천시					
141	응명동	747-1	전	356	356	김천시					
142	응명동	751-7	전	373	373	김천시					
143	응명동	751-8	전	552	552	김천시					
144	응명동	977-1	구거	2,665	1,654	국(국토교통부)					
145	응명동	977-3	구거	9,431	108	국(국토교통부)					
146	응명동	989-3	구거	1,908	22	국(국토교통부)					
147	응명동	산64-3	임야	39,469	39,469	박○이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91 현대아파트 106-1101	고아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88-5(문성지점)	근저당권설정	
								고아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지상권 설정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688-5(문성 지점)		
148	응명동	산65	임야	1,984	1,984	김○순	김천시 아포읍 의리 231				
149	응명동	산66	임야	2,777	2,777	김천시					
150	응명동	산68	임야	1,193	1,193	김천시					
151	응명동	산69	임야	2,995	2,995	김천시					
152	응명동	산70-2	임야	1,488 (1단5무보)	1,488 (1단5무보)	김○태	금릉군 어모면 응명동 176				
153	응명동	산71	임야	16,264	16,264	박○우 (1/4)	김천시 응명동 119				
						박○호 (1/4)	김천시 응명동 165				
154	응명동	산72-1	임야	8,033	8,033	김천시					
155	응명동	산72-3	임야	18,181	18,181	김천시					
156	응명동	산74-1	임야	13,238	13,238	정○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154번길 12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왜관지점)	근저당 권설정	

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명세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310(수성동2가) (시지지점)	근저당 권설정	
157	응명동	산75-2	임야	9,694	9,070	김천시					
158	응명동	산75-4	임야	2,306	1,754	김천시					
159	응명동	산77-1	임야	14,831	14,831	전○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5 탑마을 209-1203				
160	응명동	산78-1	임야	10,516	10,516	김천시					
161	응명동	산89	구거	75	24	국(국토교통부)					
162	응명동	산91	구거	26	2	국(국토교통부)					
163	응명동	산92	구거	132	132	국(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1	응명동	673-2	감나무	15년생	5.0	주	박○순	경상북도 김천시 뒷골길 12-4(응명동)				
			감나무	10년생	10.0	주						
			복숭아나무	10년생R12	5.0	주						
			살구나무	10년생R12	4.0	주						
			자두나무	10년생R12	6.0	주						
			뽕나무	10년생	2.0	주						
			농막	철재함석	5.0	㎡						
2	응명동	산70-2	감나무	50년생	2.0	주	김○철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9-13 (남산동)				
			배나무	50년생,R25~30	6.0	주						
			복숭아나무	10년생	1.0	주						
			고염나무	R20	1.0	주						
			옻나무	R5	6.0	주						
3	응명동	725-11	블루배리	5년	2.0	주	강○하	김천시 황금시장5길 7-7				
			농막	철재	40.0	㎡						
			동산	농자재,기타	1.0	식						
			울타리	그물망	1.0	식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4	응명동	725-12	가죽나무	7년	15.0	주	강○하	김천시 황금시장5길 7-7				
			농작물	취나물	170.0	㎡						
5	응명동	산74-1	복숭아나무	2년생	103.0	주	김○배	김천시 뒷골길 86 (응명동)				
			복숭아나무	3년생	73.0	주						
			복숭아나무	4년생	35.0	주						
			복숭아나무	5년생	29.0	주						
			복숭아나무	6년생	14.0	주						
			복숭아나무	R8~10	108.0	주						
			복숭아나무	9년생	25.0	주						
			복숭아나무	10년생	3.0	주						
			복숭아나무	15년생	39.0	주						
			살구나무	2년생	71.0	주						
			살구나무	3년생	121.0	주						
			살구나무	4년생	32.0	주						
			살구나무	5년생	21.0	주						
			살구나무	6년생	3.0	주						
			살구나무	7년생	38.0	주						
			살구나무	8년생	4.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살구나무	10년생	13.0	주						
			살구나무	12년생	1.0	주						
			살구나무	15년생	92.0	주						
			감나무	2년생	2.0	주						
			감나무	3년생	17.0	주						
			감나무	4년생	6.0	주						
			감나무	5년생	21.0	주						
			감나무	7년생	7.0	주						
			감나무	10년생	7.0	주						
			감나무	15년생	20.0	주						
			가죽나무	2년생	204.0	주						
			가죽나무	3년생	130.0	주						
			가죽나무	4년생	79.0	주						
			가죽나무	5년생	31.0	주						
			가죽나무	6년생	9.0	주						
			가죽나무	7년생	77.0	주						
			가죽나무	10년생	59.0	주						
			밤나무	3년생	1.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밤나무	5년생	1.0	주						
			밤나무	7년생	1.0	주						
			밤나무	10년생	1.0	주						
			밤나무	15년생	4.0	주						
			매실나무	2년생	1.0	주						
			매실나무	5년생	2.0	주						
			매실나무	7년생	1.0	주						
			매실나무	10년생	2.0	주						
			매실나무	15년생	2.0	주						
			엄나무	2년생	60.0	주						
			엄나무	3년생	25.0	주						
			엄나무	5년생	6.0	주						
			엄나무	7년생	4.0	주						
			엄나무	10년생	1.0	주						
			오가피나무	3년생	6.0	주						
			오가피나무	5년생	2.0	주						
			오가피나무	7년생	2.0	주						
			오가피나무	10년생	10.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초코베리	2년생	2.0	주						
			초코베리	3년생	1.0	주						
			초코베리	5년생	4.0	주						
			모과나무	7년생	2.0	주						
			모과나무	10년생	1.0	주						
			모과나무	15년생	12.0	주						
			체리나무	7년생	2.0	주						
			편백나무	7년생	21.0	주						
			사과나무	7년생	1.0	주						
			은행나무	20년생	1.0	주						
			자두나무	15년생	1.0	주						
			호도나무	15년생	1.0	주						
			두충나무	15년생	25.0	주						
			뽕나무	15년생	1.0	주						
			배나무		13.0	주						
			앵두나무	15년생	1.0	주						
			우산식 지주 시설		1.0	식						
			Y자	지주시설포함	1.0	식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파이프시설									
			점적관수시설		1.0	식						
			미니 콜러 설치		1.0	식						
			여과기		2.0	개						
			창고	철파이프조, 하단 블럭조	1.0	식						
			농사용전기		1.0	식						
			야생동물 퇴치 전기시설		1.0	식						
			야생동물 퇴치 그물망		1.0	식						
			산사태방지 배수시설	유관,400mm, 10개	1.0	식						
			산사태방지 시설	철재,14개	1.0	식						
			약탱크	콘크리트	1.0	식						
			물탱크	5t	2.0	개						
			양수기		2.0	개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퇴비 5t		1.0	식						
			요소 복합비료		1.0	식						
6	신음동	산23	헛개나무	10년	6.0	주	최○현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84(평화동)				
			자두나무	R5	21.0	주						
			자두나무	R2	10.0	주						
			감나무	2년	3.0	주						
			은행나무	R35	1.0	주						
7	신음동	440-5	창고	시멘트블록조	49.8	㎡	심○임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2길 23(감호동)				
			창고	시멘트블록조	18.4	㎡						
			토끼장	철파이프천막	25.2	㎡						
			축사	목조	56.0	㎡						
			견사	철재	6.0	개소						
			퇴비장	조적,판넬조	1.0	식						
			계사	목재	28.0	㎡						
			가축	개6,염소6, 토끼3,닭6	1.0	식						
			동산	축사내물품일체	1.0	식						
			은행나무	50년생	1.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사과나무	3년생	3.0	주						
			두릅나무		10.0	주						
8	신음동	산39-1	가옥	시멘트블록조	41.8	㎡	임○환	김천시 시청로 46 현대1차 107동 1106호				
			가추	경량철골조	17.5	㎡						
			창고	경량철골조	10.7	㎡						
			창고	철재	4.1	㎡						
			관정		1.0	공						
			우물	바닥포함	1.0	식						
			비닐하우스	철재	15.0	㎡						
			건조대	철파이프조	1.0	식						
			농막	철재	1.0	식						
			동산		1.0	식						
			견사	철재강판	2.0	식						
			수도관	PE관	150.0	m						
			탱자나무	울타리	70.0	m						
			취나물		8.0	㎡						
			참나물		16.0	㎡						
			도라지		10.0	㎡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우산나물		14.0	㎡						
			가죽나무	7년생	15.0	주						
			감나무	22년생	46.0	주						
			감나무	15년생	21.0	주						
			골담초	10년생	23.0	주						
			구지뽕나무	10년생	1.0	주						
			다래나무	15년생	1.0	주						
			단풍나무	20년생	10.0	주						
			대추나무	10년생	1.0	주						
			동백나무	28년생	1.0	주						
			두릅나무	10년생	250.0	주						
			매실나무	28년생	7.0	주						
			매실나무	20년생	80.0	주						
			매실나무	5년생	3.0	주						
			명자나무	28년생	1.0	주						
			모과나무	28년생	2.0	주						
			무화과나무	10년생	1.0	주						
			밤나무	22년생	4.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밤나무	13년생	1.0	주						
			배나무	18년생	203.0	주						
			백일홍	15년생	10.0	주						
			왕보리수나무	28년생	1.0	주						
			왕보리수나무	15년생	2.0	주						
			복숭아나무	25년생	1.0	주						
			블루베리	5년생	1.0	주						
			뽕나무	17년생	3.0	주						
			사과나무	13년생	2.0	주						
			산수유나무	18년생	2.0	주						
			산수유나무	10년생	1.0	주						
			살구나무	28년생	3.0	주						
			석류나무	15년생	16.0	주						
			아로니아	3년생	5.0	주						
			엄나무	28년생	1.0	주						
			엄나무	5년생	5.0	주						
			영산홍	28년생	1.0	주						
			오가피나무	10년생	1.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옻나무	15년생	38.0	주						
			은행나무	15년생	5.0	주						
			은행나무	10년생	4.0	주						
			작약	10년생	50.0	주						
			주엽나무	25년생	3.0	주						
			천리향	10년생	1.0	주						
			청목	28년생	3.0	주						
			초피나무	10년생	2.0	주						
			치자나무	10년생	3.0	주						
			치자나무	3년생	11.0	주						
			헛개나무	10년생	23.0	주						
			호도나무	25년생	2.0	주						
			호도나무	15년생	5.0	주						
			호랑가시나무	28년생	1.0	주						
			구기자	15년생	20.0	주						
			앵두나무	R5	20.0	주						
			장수매화	3 x 4	12.0	m^2						
			느타리목		30.0	개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표고목		34.0	개						
			공기압축기,고압분무기,감탈피기 등		1.0	식						
			동산이전비		1.0	식						
			솥걸이		1.0	식						
9	신음동	산50-1	복숭아나무	R10	4.0	주	창녕○씨 효○공파 좌승지종중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482-2(종중회관 2층)				
			대추나무	4년생	1.0	주						
			매실나무	R20,15년	1.0	주						
			살구나무	R15	1.0	주						
			두릅나무		1.0	군						
10	신음동	산25-3	가죽나무	R3~4	7.0	주	황○연	김천시 신음동 1129				
			모과나무	R15	1.0	주						
			뽕나무	R20	1.0	주						
			매실나무	10년	2.0	주						
			두릅나무		45.0	㎡						
11	신음동	산42-9	호도나무	7년생	1.0	주	김○호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76, 107동				
			대추나무	6년생	1.0	주						
			석류나무	5년생	1.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밤나무	2년생	1.0	주		301호(상모동, 상모한신휴플러스)				
			느릅나무	15년생	1.0	주						
12	응명동	산65	밤나무	R15~25	10.0	주	김○순	김천시 아포읍 의리 231				
			장녹		40.0	개						
			명자나무	17년생	7.0	주						
13	응명동	257-6	관정		1.0	개소	김○철	김천시 응명동 154-1				
			울타리	그물망	1.0	식						
14	응명동	산77	감나무	10년,R~10	12.0	주	전○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흥S클래스 103동 4803호				
			복숭아나무	5년,R6	1.0	주						
			두릅나무		1.0	식						
			분묘	유연	3.0	기						
			상석	화강석, 85x65 콘크리트, 90x60	1.0	식						
			상석부속	향로석 외	1.0	식						
			월석		1.0	식						
15	신음동	440-2	가옥	시멘트블럭조	50.5	㎡	진○여	김천시 신음새동네1길				
			창고1	조립식판넬	14.0	㎡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창고2	조립식판넬	9.7	㎡		45				
			펜스	철재	31.1	㎡						
			대문	철재	1.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5.6*6 2.5*6	48.6	㎡						
			동산이전비		1.0	식						
			석류나무	15년생	2.0	주						
			포도나무	5년생	2.0	주						
			머루나무	10년생	1.0	주						
			대추나무	5년생	2.0	주						
			오가피나무	10년생	1.0	주						
			앵두나무	15년생	5.0	주						
			남천나무	5년생	1.0	주						
			홍매화	5년생	1.0	주						
			추자나무	20년생	1.0	주						
			탱자울타리	20년생	10.0	m						
16	신음동	440-2	가옥	시멘트블럭조	63.1	㎡	신○호	김천시 신음새동네1길 49				
			가옥1	시멘트블럭조	8.0	㎡						
			가옥2	시멘트블럭조	9.3	㎡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가옥3	시멘트블럭조	7.2	㎡						
			보일러실	시멘트블럭조	6.2	㎡						
			화장실	시멘트블럭조	3.4	㎡						
			창고1	조립식판넬	33.1	㎡						
			창고2	조립식판넬	6.4	㎡						
			보일러실	목조	4.4	㎡						
			옥외화장실	시멘트블럭조 1.5*1.6	2.4	㎡						
			대문	철재, 문주, 스라브	1.0	식						
			담장	블록조 H:1.5	4.0	m						
			장독대 및 수도대	콘크리트	2.0	㎡						
			화단	블럭조(2*1)	2.0	㎡						
			솥걸이		1.0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21.0	㎡						
			은행나무	40년생	1.0	주						
			팽나무	10년생	1.0	주						
			자귀나무	10년생	1.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사과나무	5년생	2.0	주						
			철쭉나무	10년생	1.0	주						
			명자나무	10년생	3.0	주						
			피라칸사스	10년생	1.0	주						
			단풍나무	7년생	1.0	주						
17	신음동	산55-5	사과나무	6년생	9.0	주	최○현	김천시 신음동 394-3 현대아파트 104동 602호				
			감나무	15년생	14.0	주						
			대추나무	5년생	9.0	주						
			대추나무	10년생	1.0	주						
			호두나무	8년생	4.0	주						
			매실나무	6년생	3.0	주						
			매실나무	10년생	2.0	주						
			헛개나무	5년생	3.0	주						
			엄나무	15년생	2.0	주						
			아로니아나무	5년생	4.0	주						
			체리나무	6년생	3.0	주						
			단풍나무	15년생	1.0	주						

연번	읍면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명세	
			편백나무	6년생	1.0	주						
			치자나무	8년생	1.0	주						
			앵두나무	10년생	1.0	주						
			감나무	25년생	1.0	주						
			회양목	15년생	3.0	주						
			무궁화	20년생	1.0	주						
			무궁화	10년생	1.0	주						
18	신음동	440-53	석축	찰쌓기	1.0	식	황○자	김천시 신음동 신기3길 5				
			석축	자연석	1.0	식						
			도래솔	R25~50	30.0	주						
			분묘	유연단장	12.0	기						

안동시 고시 제2020-2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안 동 시 장

1. 사업명칭 : 안동시 정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더유은 대표 강유은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33-6, 2층(운암동)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45-6번지 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 주택	○ 대지면적 : 3,851㎡ ○ 건축연면적 기정: 10,467.2934㎡ **변경: 10,745.0211㎡** ○ 건 설 규 모 기정: 아파트 14층, 2동, 78세대 외 부대시설 **변경: 아파트 14~15층, 2동, 81세대 외 부대시설**	20,765,835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0. 09 .01. ~ 2022. 05. 1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허가

7. 사업변경승인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명 칭	안동시 정하동 아파트	좌 동	
사업계획승인	2017. 04. 28.	좌 동	
착공(예정)일자	2017. 05. 01.	2020. 09. 01.	
대지위치	안동시 정하동 645-6번지 외 3필지	좌 동	
사업주체	명선주택건설 대표 서석태, 신왜희	주식회사 더유은 대표 강유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 공 자	-		-		
대지면적	3,851㎡		좌 동		
건축면적	876.7984㎡		좌 동		
연 면 적	10,467.2934㎡		10,745.0211		
건 폐 율	22.77%		좌 동		
용 적 률	202.72%		210.61%		
주택형별 (전용) 및 세대수	72.7194형	52세대	좌 동	좌 동	민간임대
	83.4182형	26세대	좌 동	29세대	민간임대
	계----------78세대		계----------81세대		
사 업 비	14,912,279천원		20,765,835천원		
사용검사예정일	허가일로부터 ~ 2018. 09. 30.		허가일로부터 ~ 2022. 05. 15.		
주차대수	102대		좌 동		
층 수	지하2층, 지상14층		지하2층, 지상14~15층		
동수(주/부)	2/2		좌 동		
기 타	- 층수 및 높이 변경 - 창호 너비 및 위치 변경 - 주택공급 방법 변경 : 분양 ⇒ 임대 - 구조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8. 관계서류(세부변경사항)는 안동시청 건축과(☎054-840-54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미시 고시 제2020 - 228호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69-5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8. 31.

구 미 시 장

<table>
<tr><td>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td><td>○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69-53번지 일원</td></tr>
<tr><td>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td><td>○ 종 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구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td></tr>
<tr><td>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td><td>
<table>
<tr><th>시설명</th><th>규모 및 내역</th><th>비고</th></tr>
<tr><td>계</td><td>- 도시계획도로(중로, 소로)
3개 노선</td><td></td></tr>
<tr><td>중로 1류
원2호선</td><td>- 연장: 157.0m 개설
(총연장 157.0m)
- 폭원: 20.0m</td><td></td></tr>
<tr><td>중로 3류
원4호선</td><td>- 연장: 264.0m
개설(총연장 636.0m)
- 폭원: 12.0m</td><td></td></tr>
<tr><td>소로 1류
원6호선</td><td>- 연장: 259.0m
개설(총연장 259.0m)
- 폭원: 10.0m</td><td></td></tr>
</table>
</td></tr>
<tr><td>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td><td>○ 성 명 : (주)화인디엔씨 대표이사 윤 상 호
○ 주 소 : 구미시 구미중앙로 44(원평동)</td></tr>
<tr><td>5. 사업시행기간
[변경]</td><td>○ 당 초 : 2016. 2. 24. ~ 2020. 6. 30.
○ 변 경 : 2016. 2. 24. ~ 2022. 6. 30.</td></tr>
<tr><td>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td><t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시행 후 준공 전 양도하여야 함</td></tr>
<tr><td>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td><td>○ 붙임와 같음</td></tr>
</table>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번호	위치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상)		비고
	읍.리	지번			소계	중로 1-원2	중로 3-원4	소로 1-원6	주소	성명	
계					8,940	3,140	3,151	2,649	[변경없음]		
1	고아.원호	269-43	답	39	39	39	-	-	-	구미시	
2	〃	269-44	답	607	607	607	-	-	-	구미시	
3	〃	269-46	답	126	126	126	-	-	-	구미시	
4	〃	269-47	답	28	28	28	-	-	-	구미시	
5	〃	269-48	답	82	82	82	-	-	-	구미시	
6	〃	269-53	답	136	136	136	-	-	국	농림수산부	
7	〃	385	대	64	64	64	-	-	구미시 도량동 685-38 구미시 신비로3길 37-5(신평동)	김*년 김*수	
8	〃	386-1	답	561	561	561	-	-	구미시 도량동 685-38 구미시 신비로3길 37-5(신평동) 선산군 고아면 원호동 365	김*년 김*수 김*동	
9	〃	388-2	답	151	151	-	-	151	구미시 선기로77, 101동702호(남통동,남통이편한세상)	문*선	
10	〃	389-2	전	284	284	-	-	284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6길 11, 107동 206호(원호대우아파트)	김*조	
11	〃	390-1	전	28	28	-	-	28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513	이*순	
12	〃	396-1	답	64	64	-	-	64	구미시 구미중앙로 44, 3층(원평동) 구미시 인동중앙로6길 23-3(인의동)	주식회사 미소산업 박*주	

번호	위치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상)		비고
	읍.리	지번			소계	중로 1-원2	중로 3-원4	소로 1-원6	주소	성명	
13	〃	397-4	대	1	1	-	-	1	선산군 고아면 원호동 158	선산김씨 칠덕사종중	
14	〃	398-1	답	16	16	-	-	16	구미시 구미중앙로 44, 3층(원평동) 구미시 인동중앙로6길 23-3(인의동)	주식회사 미소산업 박*주	
15	〃	403-2	답	29	29	-	-	29	구미시 송정동 443-11	선산김씨 원당파종중	
16	〃	405-4	답	206	206	-	-	206	선산읍 고아면 원호동 246	장*희	
17	〃	405-5	답	4	4	-	-	4	-	구미시	
18	〃	406-13	잡	37	37	-	-	37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46	장*희	
19	고아.원호	406-14	창	14	14	-	-	14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49	장*희	
20	〃	406-15	답	88	88	-	-	88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49	장*희	
21	〃	491-97	천	278	278	278	-	-	국	건설부	
22	〃	491-99	제	137	137	137	-	-	국	건설부	
23	〃	491-101	답	488	488	488	-	-	-	경상북도	
24	〃	491-108	제	48	48	48	-	-	국	건설부	
25	〃	510-4	구	5	5	5	-	-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	524-2	구	282	282	-	-	282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	524-4	구	939	939	-	-	9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	산44-15	임	24	24	-	24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33-7 부천시 원마구 상동 445 꿈동산 1909-2302	김*우 황*연	

번호	위치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상)		비고
	읍.리	지번			소계	중로 1-원2	중로 3-원4	소로 1-원6	주소	성명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21, 107동 1002호(경남아너스빌)	김*운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이*숙	
29	〃	산44-20	임	85	85	-	85	-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이*숙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윤*훈	
30	〃	산44-21	임	6	6	-	6	-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이*숙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윤*훈	
31	〃	산44-22	임	2	2	-	-	2	구미시 형곡동 168-4 대림베스트빌 201동 1303호	윤*덕	
32	〃	산44-23	임	42	42	-	-	42	구미시 형곡동 168-4 대림베스트빌 201동 1303호	윤*덕	
33	〃	산44-24	임	13	13	-	13	-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윤*훈	
34	〃	산44-25	임	2,347	2,347	541	1,806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33-7	김*우	
									부천시 원마구 상동 445 꿈동산 1909-2302	황*연	

번호	위치		지목	토지 대장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상)		비고
	읍.리	지번			소계	중로 1-원2	중로 3-원4	소로 1-원6	주소	성명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21, 107동 1002호(경남아너스빌)	김*운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이*숙	
35	고아.원호	산44-27	임	1,475	1,475	-	1,131	344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윤*훈	
36	〃	산101-9	구	15	15	-	13	2	국	농림수산부	
37	〃	산101-10	구	116	116	-	-	116	국	농림수산부	
38	〃	산101-13	구	67	67	-	67	-	국	농림수산부	
39	〃	산101-14	체	6	6	-	6	-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이*숙	
									구미시 산책길 7, 206동 1601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비단지)	윤*훈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영주시 고시 제2020-115호

영주시 장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형도면 고시

영주시 「장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31.

영 주 시 장

1. 지역·지구 명칭 : 장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역

2. 고시내용

시·군	사 업 명	위 치		고시면적 (㎡)	비 고
		기점	종점		
영주시	장수면 중심지활성화사업	반구리 981-1	반구리 1169-7	4,769	영주시

3. 관계도서 : 붙임조서 참조

4.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 열람장소

가. 영주시 건설과(054-639-6952)

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054-639-5042)

상주시 고시 제2020 - 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8. 31.

상 주 시 장

하천의 명칭	삼덕천(지방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사벌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덕담1길 60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850번지 면적 : 31.0㎡
점용목적 및 사업개요	목적 : 산지유통시설 신축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개요 : 흄관매설 (D1000) L=4.0m, 날개벽 및 FRP자동문비 1식
점용 기간	2020년 8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김천시 공고 제2020-1776호

신조 공인 공고

김천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김 천 시 장

1. 공인 신조 사유

-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김천시 일자리기금 조성

2.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8. 31.

3. 신조 공인 인영 : 붙임 참조

[붙임]

신조 공인 인영

신조공인명	인영	규격	비고
김천시일자리기금 출납원인		2.0㎝× 2.0㎝ 훈민정음체·정방형	

영주시 공고 제2020 - 873호

영주 도시계획시설사업(가흥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영주 도시계획시설사업(가흥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주문화예술회관(☎054-639-595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31.

영 주 시 장

1. 공람기간 : 2020. 8. 31. ~ 2020. 9. 22.

2. 공람장소(관계도서 비치) : 영주문화예술회관

3. 도시계획사업 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가흥공원)사업

- 명 칭 : 문화예술회관 까치홀 무대장비 창고 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385-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영 주 시 장

- 주 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라. 사업기간(변경) : (기정)2009. 05. 14. ~ 2012. 06. 30.

(변경)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마. 사업규모(변경) ※금회 사업부지에 한함

- 사업면적 및 규모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 정	13,400	2,662.19	3,627.00	
변 경	증) 691	증) 86.45	증) 103.04	면적 정정 및 증축
변경후	14,091	2,748.64	3,730.04	금회 사업면적 74.40㎡

- 건축개요

구 분	층별	용도	바닥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	3,730.04	2,748.64	
갤러리	1층	갤러리	445.76	460.86	기존
	소계	-	445.76		
공연장	지1	공연장	578.69	1,899.13	금회증축 (창고 : 74.40㎡)
	1층	공연장	1,661.92		
	1층	공연장(창고)	103.20		
	2층	공연장	82.06		
	소계	-	2,425.87		

구 분	층별	용도	바닥면적(㎡)	건축면적(㎡)	비고
문화원	지1	문화원	204.04	388.65	기존
	1층	문화원	307.25		
	2층	문화원	347.12		
	소계	문화원	858.41		

바. 사용(수용)할 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소	성명	
1	영주시 가흥동	산45-7	임	56,577	851	증)691	1,54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장	
2		385-4	대	13,372	12,496	-	12,496			
3		385-5	임	231	28	-	28			
4		1382-3	구	101	25	-	25	-	국토교통부	
계	4필지			70,281	13,400	증)691	14,091			

끝.

경산시 공고 제2020-1203호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과 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2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공원

○ 명　　칭 : 중로 1-18호선, 중로 1-22호선, 중산1공원, 중산2공원

3. 사업의 규모

○ 중로 1-18호선 : L = 116m, B = 0~3m (확장)

○ 중로 1-22호선 : L = 314m, B = 10m

○ 중산1공원 : A = 2,122㎡

○ 중산2공원 : A = 1,48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자 이창하, 이창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0층)

5.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12.31.까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경산시 중산동 에이파크 신축공사(1단지)에 따른 주변도로(중로1-18호선, 중로 1-22호선),공원(중산1공원,중산2공원)를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경산시 홈페이지 참조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0. 8. 31. ~ 2020. 9. 14.(공고일로부터 15일간)

10.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	20	집산도로	1,431.0	대로2-5(중산동 150-2)	대로1-6(옥산동 613-1)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2000-10호 (2000.01.13)	
변경	중로	1	18	20 ~ 23	집산도로	1,431.0	대로2-5(중산동 150-2)	대로1-6(옥산동 613-1)	일반도로			가감속차로 설치구간 폭원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8호선	중로1-18호선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 폭 20m -변경 : 폭 20~23m •선형, 연장 등 변경없음	중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반영한 중로1-18호선변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1-18호선) 일부 구간 폭원 변경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고 제2020-1204호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1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40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공원

○ 명　　칭 : 중로 1-22호선, 중산3공원

3. 사업의 규모

○ 중로 1-22호선 : L = 223.1m, B = 15m

○ 중산3공원 : A = 768㎡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자 이창하, 이창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0층)

5.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12.31.까지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경산시 중산동 에이파크 신축공사(2단지)에 따른 주변도로(중로 1-22호선), 공원(중산3공원)을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열람장소 비치, 경산시 홈페이지 참조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0. 8. 31. ~ 2020. 9. 14.(공고일로부터 15일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공고 제2020-1412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관리 및 신청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8. 31.

울 진 군 수

1.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개시일 : 2020. 9. 1.

2. 관리부서 : 울진군 열린민원과

3. 등록사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스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4. 등록 공인 및 인영

구 분	공인명	인영	규격 및 글씨체	비고
등 록	울진군수의인		전서체 2.1cm 정방형	전자 이미지 공인

울진군 공고 제2020-1416호

울진 군계획시설(수산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일원『울진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수산유원지)사업의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31.

울 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7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수산유원지)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울진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면적(변경)

사 업 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비 고
울진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근남면 수산리 72번지 일원	◦ 시설결정 : A=85,000㎡ ◦ 금회시행 – 기정 : A=19,437㎡ – 변경 : A=11,110㎡	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성 명 : 울진군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계	52필지			48,348	19,437	–	–	–	–	
1	근남면 수산리	1–5	전	737	1	국방부	–	–	–	
2	〃	66–3	구	2,327	707	농림축산 식품부	–	–	–	
3	〃	67–1	전	992	149	국방부	–	–	–	
4	〃	68	전	1,246	278	국방부	–	–	–	
5	〃	68–1	전	162	81	울진군	–	–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6	〃	69	대	46	46	울진군	-	-	-	
7	〃	69-1	대	106	106	국방부	-	-	-	
8	〃	70	전	46	46	국방부	-	-	-	
9	〃	71	전	112	103	국방부	-	-	-	
10	〃	72	전	56	2	이희윤	근남면 수산리 72	-	-	
11	〃	72-1	전	3	3	이희윤	근남면 수산리 72	-	-	
12	〃	72-2	전	53	46	국방부	-	-	-	
13	〃	73	전	93	93	울진군	-	-	-	
14	근남면 수산리	73-1	전	30	30	국방부	-	-	-	
15	〃	74	대	228	228	울진군	-	-	-	
16	〃	75	대	162	125	김정제	-	-	-	
17	〃	76	대	2,549	1,592	울진군	-	-	-	
18	〃	77	전	466	466	울진군	-	-	-	
19	〃	79	전	499	499	울진군	-	-	-	
20	〃	79-1	도	939	751	국토교통부	-	-	-	
21	〃	87-1	전	1,352	42	울진군	-	-	-	
22	〃	88	전	667	667	울진군	-	-	-	
23	〃	92	대	410	410	울진군	-	-	-	
24	〃	93	전	906	904	울진군	-	-	-	
25	〃	95	임	9,496	2,013	울진군	-	-	-	
26	〃	95-1	전	519	3	울진군	-	-	-	
27	〃	96	대	605	592	울진군	-	-	-	
28		113-1	답	33	29	이봉출	-	-	-	
29	〃	132-21	답	141	133	울진군	-	-	-	
30	〃	133-20	답	34	34	울진군	-	-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31	〃	153-11	답	291	4	국방부	-	-	-	
32	〃	154-1	답	8,523	3,980	울진군	-	-	-	
33	〃	154-2	답	261	261	국방부	-	-	-	
34	〃	154-14	구	618	24	농림축산식품부	-	-	-	
35	〃	155-13	도	1,158	10	울진군	-	-	-	
36	〃	156-1	답	788	788	울진군	-	-	-	
37	〃	173-1	답	20	17	울진군	-	-	-	
38	〃	175-2	전	1,490	1,377	울진군	-	-	-	
39	〃	175-3	도	136	136	조흥서	근남면 수산리 71	-	-	
40	〃	175-4	대	856	752	울진군	-	-	-	
41	〃	176-3	전	298	130	울진군	-	-	-	
42	〃	176-4	임	367	203	울진군	-	-	-	
43	〃	178-1	도	248	57	국토교통부	-	-	-	
44	〃	178-3	제	3,282	51	국토교통부	-	-	-	
45	〃	178-8	답	224	163	경상북도	-	-	-	
46	〃	188-1	답	33	29	김화출	근남면 수산리 475	-	-	
47	〃	190-4	답	476	476	국방부	-	-	-	
48	〃	190-7	답	108	108	국방부	-	-	-	
49	〃	190-9	답	481	481	국방부	-	-	-	
50	〃	190-12	답	124	124	국방부	-	-	-	
51	〃	287-6	구	1,812	79	농림축산식품부	-	-	-	
52	〃	290-13	구	1,739	8	농림축산식품부	-	-	-	

-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계	36필지			37,491	11,110	-	-	-	-	
1	근남면 수산리	66-3	구거	2,179	704	농림축산식품부	-	-	-	
2	〃	68-1	전	162	13	울진군	-	-	-	
3	〃	69	대지	46	17	울진군	-	-	-	
4	〃	72	전	56	2	이희윤	근남면 수산리 72	-	-	
5	〃	72-1	전	3	3	이희윤	근남면 수산리 72	-	-	
6	〃	72-2	전	53	33	국방부	-	-	-	
7	〃	73	전	93	83	울진군	-	-	-	
8	〃	73-1	전	30	13	국방부	-	-	-	
9	〃	74	대지	228	228	울진군	-	-	-	
10	〃	75	대지	162	122	김정제	근남면 수산리	-	-	
11	〃	76	대지	2,549	1,656	울진군	-	-	-	
12	〃	77	전	466	466	울진군	-	-	-	
13	〃	79	전	499	499	울진군	-	-	-	
14	〃	79-1	도로	636	621	기획재정부	-	-	-	
15	〃	79-2	도로	91	91	기획재정부	-	-	-	
16	〃	87-1	전	1,352	7	울진군	-	-	-	
17	〃	88	전	667	667	울진군	-	-	-	
18	〃	92	대지	410	410	울진군	-	-	-	
19	〃	93	전	906	906	울진군	-	-	-	
20	〃	95	임야	9,496	204	울진군	-	-	-	
21	〃	95-1	전	519	2	울진군	-	-	-	
22	〃	96	대지	605	580	울진군	-	-	-	
23	〃	113-1	답	33	29	이봉출	근남면 산포리 678	-	-	
24	〃	132-21	답	141	131	울진군	-	-	-	
25	〃	133-20	답	34	34	울진군	-	-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26	〃	154-1	답	8,523	120	울진군	-	-	-	
27	〃	156-1	답	788	788	울진군	-	-	-	
						조흥서	근남면 수산리 71	-	-	
28	〃	173-1	답	20	17	울진군	-	-	-	
29	〃	175-2	전	1,490	1,350	울진군	-	-	-	
30	〃	175-3	도로	136	136	조흥서	근남면 수산리 71	-	-	
31	〃	175-4	대지	856	720	울진군	-	-	-	
32	〃	176-3	전	298	127	울진군	-	-	-	
33	〃	176-4	임야	367	199	울진군	-	-	-	
34	〃	178-16	도로	46	46	기획재정부	-	-	-	
35	〃	287-6	구거	1,812	78	농림축산식품부	-	-	-	
36	〃	290-13	구거	1,739	8	농림축산식품부	-	-	-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유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향후 자연재해 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8. 열람 및 의견 청취 장소 :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9.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054-789-6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13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8.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70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산90-10번지 및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 73-2번지 일원 면적 : 19.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시설개요 : 한전주 152본(예천 151본, 의성 1본)
점용 기간	당초 : 2015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변경 :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김천소방서 공고 제2020-1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8. 31.

김 천 소 방 서 장

1. 등록 내용

○ 상 호 : (주)금정소방이엔지

○ 대 표 자 : 김주하

○ 영업소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24(교동, 3층)

○ 업 종 : 소방시설관리업

○ 등 록 번 호 : 제 김천-2020-0001호 (2020. 08. 26.) 끝.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